

# 평창군 노인 목욕비 및 이·미용비 지원 조례안

(박춘희 의원)

의안 번호	533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: 2026년 2월 6일

발 의 자 박춘희 의원

찬 성 자 남진삼, 심현정, 이은미의원

## 1. 제안이유

- 현재 운영중인 ‘평창군 어르신 이·미용비 지원사업’이 「평창군 노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」 제6조를 근거하여 시행중이나 체계적 운영을 위해 지원 및 운영 내용 등을 명확히 하여 단독 조례를 마련하고자 하며
- 우리군에 거주하는 7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목욕비 및 이·미용비를 지원함으로써 노인의 위생관리와 건강증진을 도모하고,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- 가. 지원근거 마련 (안 제2조)
- 나. 지원대상 및 지원방안 (안 제3조~제4조)
- 다. 카드 사용 및 카드시스템 운영·위탁 (안 제5조~제6조)
- 라. 카드의 사용 중지 및 환수 (안 제7조)
- 마. 사업비의 정산 (안 제8조)

#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노인복지법」

나. 예산조치 : 붙임 참조(비용추계서)

다. 집행기관의견수렴 : 2026. 1. 26. ~ 2. 3. 의견 없음.

## 평창군 노인 목욕비 및 이·미용비 지원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평창군에 거주하는 노인의 위생관리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노인 목욕비 및 이·미용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노인 목욕비 및 이·미용비 지원) 평창군수(이하 “군수”라 한다)는 노인의 위생관리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노인 목욕비 및 이·미용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제3조(지원대상) 지원대상자는 지급기준일 현재 평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 노인으로 한다. 다만, 사회복지시설, 장기요양시설, 기타 시설 등에 입소 중인 사람은 제외한다.

제4조(지원방법) ① 목욕비 및 이·미용비는 바우처카드(이하 “카드”라 한다)로 반기별 6만원(연간 12만원)을 지원한다. 다만, 당해연도 말일까지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소멸한다.

② 전입 또는 지원대상 연령도래 등의 사유로 인하여 최초로 지원대상자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반기부터 지원하며 소급하여 지급할 수 없다.

③ 읍·면장은 행정전산망을 이용하여 반기별로 지원대상 여부를 일괄 조사하여야 하며, 군수는 조사 결과를 근거로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.

④ 카드를 발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최초 발급 및 재발급 시 별지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민등록지 읍·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⑤ 읍·면장은 지원대상자 또는 대리인에게 카드를 배부한다.

제5조(카드의 사용) 카드는 군수에게 가맹점으로 등록된 업소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, 지원대상자 본인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.

제6조(카드시스템 운영·위탁) 군수는 카드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·운영하기 위하여 카드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사무를 전문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.

제7조(카드의 사용 중지 및 환수)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카드 사용을 중지하고 지원금액의 환수 등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.

1.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
2.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가맹점 사업주가 청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

제8조(사업비의 정산 등) 위탁을 받은 전문업체는 당해 연도 말 기준으로 사업비 잔액에 대한 정산을 하여야 하며, 잔액 발생의 경우 다음해 1월까지 반환하여야 한다.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 「평창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8호를 삭제한다.

제6조를 삭제한다.

【별지 서식】

노인 목욕비 및 이·미용비 지원 바우처카드 발급 신청서			
구 분		<input type="checkbox"/> 신규 <input type="checkbox"/> 재발급 [사유 : 분실( ), 훼손( ), 기타( )]	
대 상 자	성 명	생년월일	
	주 소	전 화 번 호	
<p>「평창군 노인 목욕비 및 이·미용비 지원 조례」제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노인 목욕비 및 이·미용비 지원을 위한 바우처카드 발급을 신청합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년 월 일 신청인 (서명 또는 인) (지원대상자와의 관계 : )</p> <p><b>평창군수 귀하</b></p>			
구비서류 신분증(대리 신청 시 지원대상자의 신분증 및 도장, 대리인의 신분증) ※ 카드 훼손인 경우 : 반납 카드			

# 관계법령

## 노인복지법

제4조(보건복지증진의 책임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며,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.

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을 강구함에 있어 제2조에 규정된 기본이념이 구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③노인의 일상생활에 관련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그 사업을 경영함에 있어 노인의 보건복지가 증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26조(경로우대)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송시설 및 고궁·능원·박물관·공원 등의 공공시설을 무료로 또는 그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.

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일상생활에 관련된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그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주도록 권유할 수 있다.

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에게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주는 자에 대하여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
# 비용추계서

## 1.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

- 비용발생 요인 : '평창군 노인 목욕비 및 이·미용비 지원사업'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비
- 관련조문 : 「평창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(안)」 제6조

## 2. 비용 추계결과

### 가. 추계의 전제

- '평창군 노인 목욕비 및 이·미용비 지원사업'은 평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 노인에게 월 1만원씩 목욕비 및 이·미용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군비로 시행하며, 사업운영에 필요한 지원비와 제반 비용(홍보비, 카드 수수료 등)이 소요됨

### 나. 추계 결과

(단위 : 천원)

구 분	2025년	2026년	2027년	2028년	2029년	
총 소요액	712,000	1,169,020	1,272,600	1,393,800	1,515,000	
대상자(명)	5,800	9,620	10,500	11,500	12,500	
세출	지원비	700,000	1,154,400	1,260,000	1,380,000	1,500,000
	제반비용(홍보비, 카드수수료 등)	12,000	14,620	12,600	13,800	15,000

### 다. 재원조달 방안 : 자체재원(군비)

## 3. 작성자

작성자	평창군 기획재정국 가족복지과장 이서진
연락처	(033) 330 - 2124

**< 연도별 비용추계표 >**

(단위 : 천원)

구 분		1차년도 (2025년)	2차년도 (2026년)	3차년도 (2027년)	4차년도 (2028년)	5차년도 (2029년)	계
<b>세 출</b>		712,000	1,169,020	1,272,600	1,393,800	1,515,000	6,062,420
어르신 아·미용비 지원		712,000	1,169,020	1,272,600	1,393,800	1,515,000	6,062,420
<b>재원 조달</b>		712,000	1,169,020	1,272,600	1,393,800	1,515,000	6,062,420
의존 재원	소 계						
	보조금						
	지방교부세						
자체 수입	소 계	712,000	1,169,020	1,272,600	1,393,800	1,515,000	6,062,420
	지방세(군비)	712,000	1,169,020	1,272,600	1,393,800	1,515,000	6,062,420
	세외수입						
지방채							
기 금							
공기업 특별회계							
민간자본							
해외자본							
기타 (채무부담, 민자 등)							